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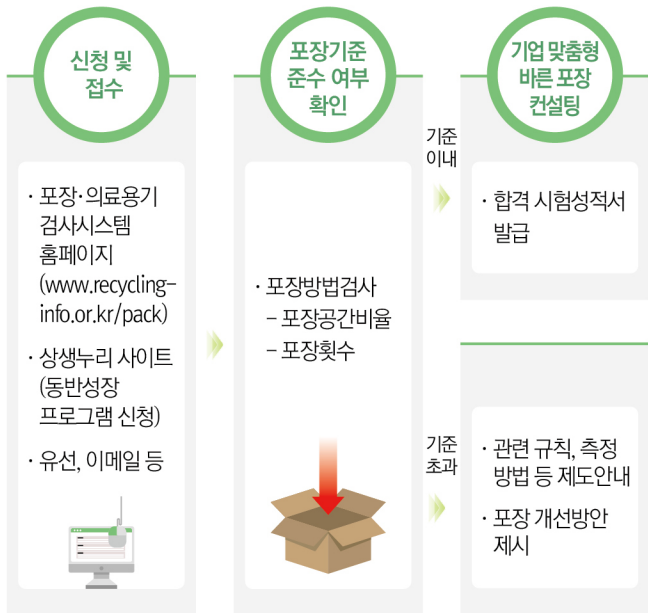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 제품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2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커레이션 케이크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잡화류	완구·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 (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30% 이하	2차 이내
종합 제품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의류	와이셔츠류·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전자제품류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 (블루투스) 스피커 (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35% 이하	2차 이내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25% 이하	2차 이내

※ 단위제품 :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

※ 종합제품 :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

「바른 포장 컨설팅」 서비스 제공



※ 포장검사제도 안내 등은 별도 비용 없음

※ 단, 성적서 발급(요청업체에 한함)이 필요한 경우 검사수수료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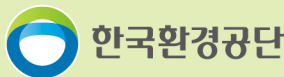
● 컨설팅 대상

- 포장검사, 관련법령 정보가 취약한 중소기업
- 검사의뢰제품 중 법적기준 초과인 제품
- 그 밖에 포장재 개선 등 조언이 필요한 자발적 신청업체 등

● 컨설팅 주요내용

- 관련 규칙,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 등 제도 안내, 포장재 개선 조언
-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지원

한국환경공단은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포장검사, 교육·홍보, 제도개선, 친환경포장컨설팅 등
포장검사제도를 운영합니다.



포장검사시스템



자연가꾸기 사랑가꾸기

포장재질 포장방법 - 검사



포장재질 · 포장방법 검사란?



- 1993년 시행된 제도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 등’)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관해 검사하는 제도
- 포장재질검사 : [분리배출 표시를 위한 포장재의 재질검사](#) (합성수지 재질이나 그 밖의 복합재질로 된 제품·포장재만 해당) 및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사용 여부 검사](#)
 - PVC를 사용하여 철평(래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사용 금지
 - PVC 포장재 사용 금지(계란·메추리알, 튀김식품·김밥류·햄버거류·샌드위치류)
- 포장방법검사(과대포장검사) :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등 8개 제품군 32개 품목에 대해 [포장공간비율](#)(포장용기 대비 빈 공간 비율, 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포장용기에 담거나 포장재로 씌운 횟수, 1~2차 이내) [기준 준수 여부 검사](#)

관련 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933호)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1-275호)
-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예외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63호)

포장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포장검사 수수료 및 소요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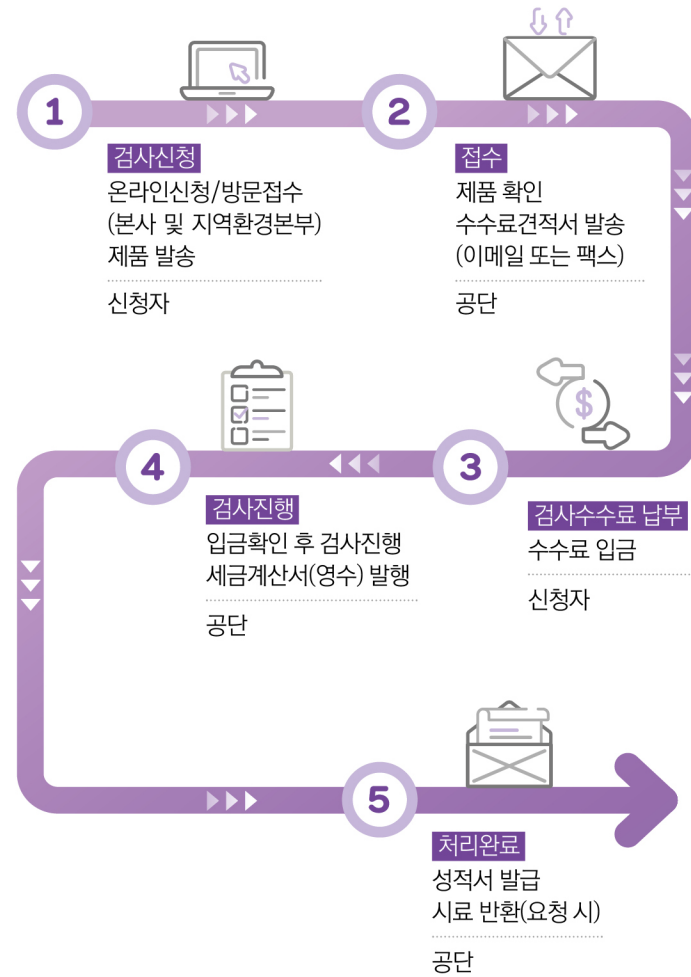
○ 검사 수수료

구분			시료당 수수료(원)	비고
포장재	포장재질	분리배출표시	50,000	
		PVC 유해물질	52,000	
	포장공간	단위제품	35,000	측정대상 구성품 5개 이상
			45,000	
		종합제품	44,000	측정대상 구성품 5개 이상
			57,000	
	포장횟수	단위/종합제품	18,000	
성적서	영문성적서		4,000	
	재발급 성적서		2,000	

※ 수수료는 건당 금액, 부가세 별도.

- 검사 기간: 검사수수료 입금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대 7일 소요 (입금확인 후 순차적으로 검사 진행)

포장검사 절차



① 신청자: **포장·의료용기 검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해당검사기관으로 제품(시료) 발송
(홈페이지: www.recycling-info.or.kr/pack)

② 공 단: 제품 수령 후, 접수 및 견적서(수수료) 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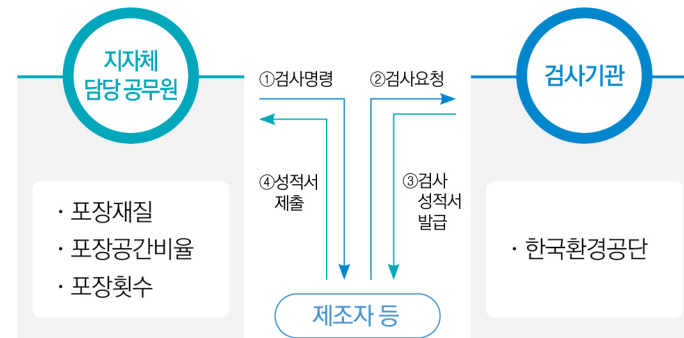
③ 신청자: 견적서(수수료) 확인 후, 검사수수료 납입

④ 공 단: 입금 확인 후, 검사 진행 및 세금계산서(영수) 발행

⑤ 공 단: 검사 완료 후, 시험성적서 발송 및 시료 반환처리(착불)

※ 제품손상 등의 사유로 시료폐기를 원하는 경우, 별도 폐기요청

과대포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형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이 성행하기 쉬운 **명절(설·추석), 연말연시, 특정기념일 및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

-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대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포장검사명령

-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검사결과 기준초과로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재포장 금지 제도 시행 ('21.1.1~) 및 예외기준 고시



- 재포장이란 포장된 제품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으로 ①판매과정 추가 묶음, ②행사기획 묶음, ③3개 이하 묶음이 해당

- 재포장 예외기준: ①1차 식품, ②날개로 미판매 제품, ③선물포장 요구, ④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과태료 부과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8]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음

포장검사업무 지역별 연락처



구분	연락처	FAX	주소
본사	032-590-4917	032-590-492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환경포장관리부
수도권 서부 환경본부	02-3153-0503	02-6008-302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8길 82(등촌동) 강서IT밸리 8층 한국환경공단 제도운영1부
수도권 동부 환경본부	031-590-0622	031-590-06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리더스빌딩 3층 한국환경공단 제도운영부
강원환경본부	033-240-9548	033-240-9501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8층 (온의동, 대한교원공제회) 한국환경공단 제도운영부
부산울산 경남 환경본부	051-366-3765	051-366-3779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681번길 34 한국환경공단 제도운영1부
대구경북 환경본부	053-580-7552	053-591-7347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9(지산동) 한국환경공단 제도운영부
충청권 환경본부	042-939-2339	042-939-232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6(둔산동) 한국환경공단 제도운영부
충북지사	043-219-6432	0505-822-785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50번길 73(울랑동) KT 6층 한국환경공단 제도운영부
광주전남 제주 환경본부	062-949-0747	062-959-8896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7(우산동) 3층 한국환경공단 제도운영부
전북 환경본부	063-279-0839	063-279-082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100 한국환경공단 제도운영부
제주지사	064-725-6547	064-721-556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영평동) JDC 엘리트빌딩 5층 503호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지원부

※ 본사 및 지역환경본부 관할 구역에 따라 검사기관 자동 배정